

의안번호	제377호
의결연월일	2021. 10. 18.

- 예산군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-

# 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1. 9. 29. 김태금, 이상우, 홍원표 의원

나. 회 부 일 자 : 2021. 10. 8.

다. 상 정 일 자 : 2021. 10. 18.

제274회 예산군의회(임시회)

제1차 행정복지위원회

## 2. 제안설명 요지 [의원 : 김 태 금]

### 가. 제안이유

-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16조에 따라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(안 제1조, 제2조)
- 군수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(안 제3조, 제4조)
- 지원 사업 및 가정 밖 청소년 지원 규정(안 제5조, 제6조)
-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7조)
-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원칙 규정(안 제8조)

### 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: 박 우 현)

- 본 조례안은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2021. 3. 23. 개정되어 9. 24.부터 시행 중인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의 개정이유를 통해 "가출 청소년"에 대한 국가의 지원 및 보호 정책이 가출 이후 "가정 밖" 이라는 위험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변화된다고 밝힘에 따라,
- 본 조례의 제정이 이러한 국가 정책과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자체 시책 등을 강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,
-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므로,
-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.

### 4. 질의·답변요지

- 없 음

### 5. 토 론 요 지

- 없 음

### 6. 심 사 결 과

- 원안가결

### 7. 소수의견 요지

- 없 음

### 8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 음